

# NAFTA 締結이 우리 電機工業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重電機產業을 中心으로—



產業研究院  
美洲研究室  
責任研究員 金圭泰

## I. 序

1994년 1월부터 발효될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은 향후 우리의 對美輸出에 상당히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이다. 이는 동 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멕시코가 우리나라와 같이 美國을 최대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 상품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美國市場에서의 競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NAFTA 締結이 우리의 對美輸出에 미칠 全般的인 影響을 먼저 살펴본 후 電機工業, 특히 重電機產業에 미치는 影響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對應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NAFTA締結이 우리의 對美輸出에 미치는 全般的 影響

동 협정 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가장 큰 否定的影影響은 域內國產關稅 및 非關稅障壁撤廢로 인한 우리의 對美輸出 價格競爭力이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弱化되는 것으로 향후 멕시코의 대미 수출 상품이 동 협정 발효에 의한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됨에 따라 대미수출시장에서 멕시코와 輸出競爭關係에 있는 業種의 輸出減少가 우려된다.

특히 동 협정에서는 域內 生產 및 雇傭擴大를 위해 自動車·컬러 TV·컴퓨터·纖維 및 衣類 등에 대한 原產地規程을 強化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북미지역 기 진출업체들이 部品輸入先을 域內로 轉換함에 따른 대미 수출감소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한 先進國들의 對멕시코 進出 加速화에 따른 멕시코의 技術 및 組立生產能力의 向上으로 인해 북미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수출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그러나 동 협정에 따른 肯定的인 要因, 즉 美國의 GNP增加, 수입제품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증대로 인한 대미수출증가 등의 貿易創出 效果 뿐만 아니라 域內의 技術·標準分野의 統一化에 따른 輸出費用減少에 의한 수출경쟁력 회복요인도 있으며 멕시코의 金融市場開放에 따른 현지금융의 가능성 및 陸上運送市場의 개방에 따른 운송비의 절감 가능성도 있다.

## III. NAFTA締結이 電機工業에 미치는 影響

### 1. 重電機 產業

#### 가. 全般的 影響

##### (1) 貿易現況

199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重電機製品 對美輸出은 1億 9,264萬 달리이었으며 1989~1991년중의 연평균 對美輸出 增加率도 -4.2%를 기록하였다. 이는 동기간中 靜止機器 部門이 연평균 2.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回轉機器 部門과 其他 重電機 部門이 연평균 각각 1.1%, 13.0% 감소한데 기인한다.

이에 비해 1991년말 현재 멕시코의 重電機製品 對美輸出은 우리의 약 10배 규모인 19億 496萬달리이었으며 1989~1991년중의 연평균 對美輸出 增加率도 9.8%를 기록하였다. 이는 동기간中 回轉機器, 靜止機器 등 中전기의 전부문에 걸쳐 증가세를 보인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重電機製品의 美國 輸入市場占有率은 1989년 2.2%에서 1991년에는 1.9%로 감소한데 비해, 멕시코는 동기간中 16.8%에서 18.6%로 증가하였다.

표 1. 韓·멕시코의 重電機製品 對美輸出 現況

(單位: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9,378,059	9,836,095	10,235,614	4.5
韓 國	290,811 (2.2)	185,381 (1.9)	192,644 (1.9)	-4.2
멕 시 코	1,579,388 (16.8)	1,756,215 (17.9)	1,904,957 (18.6)	9.8

資料 : KIET, Database

註 : ( )는 美國의 重電機製品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 (2) 關稅撤廢로 인한 影響

美國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重電機製品에 대한 關稅率은 표2와 같이 대부분 2~5.8%이다. 따라서 NAFTA에 의해 美國이 멕시코로 부터의 重電機製品輸入에 대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경우 우리 重電機製品은 관세면제 또는 인하액 만큼 對美輸出 價格競爭力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 美國의 重電機製品에 대한 輸入關稅率

關 稅 率	品 目 數	GSP例外品目數
Free	4 (3.2)	-
2~2.8%	30(23.8)	-
3~3.9%	43(34.1)	3
4.2~4.9%	14(11.1)	-
5~5.8%	29(23.0)	3
6% 이상	6 (4.8)	-
計	126(100.0)	6

그러나 美國은 멕시코에 대해 一般特惠關稅制度 (GSP)에 따라 이미 관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重電機製品 總 126個 品目(HS 8단위 기준)중 GSP例外品目(6個 品目)만이 표에 따른 關稅撤廢 스케줄에 따라 대미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 할 것이다.

### 표 3. NAFTA에 의한 美國의 重電機製品 關稅撤廢 스케줄

總品目數 <sup>1)</sup>	關稅撤廢 스케줄 <sup>2)</sup>	對象品目數	GSP例外品目數
126	A	120(95.2)	4
	B	2 (1.6)	2
	C	—	—
	D	4 (3.2)	—

註: 1) HS 8單位 基準임.

- 2) 關稅撤廢 스케줄 중 A는 '94. 1. 1일 부터 즉시 관세철폐, B는 5년에 걸쳐 관세철폐, C는 10년에 걸쳐 관세철폐, D는 현행관세가 Free인 것을 말함.
- 3) ( )는 총품목수에 대한 비중임.

한편 199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GSP例外品目에 대한 對美輸出은 6,534萬 달러를 기록하여 總 重電機製品 對美輸出의 33.9%를 차지하고 있고 1989~1991년중의 연평균 對美輸出 增加率도 -13.4%를 기록한데 반해, 멕시코의 GSP例外品目에 대한 對美輸出은 우리의 10.6배 규모인 6億 1,882萬 달러를 기록하여 總 重電機製品 對美輸出의 32.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중의 연평균 대미수출 증가율도 8.2%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멕시코에 의한 美國輸入市場 잠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原產地 規程으로 인한 影響

原產地 規程은 적절한 關稅의 算定, 輸入製品에 대한 原產地 表示 確保, 國別 特定貿易措置(쿼터 등)의 施行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NAFTA에서는 域內國產 製品에 한해 關稅免除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NAFTA에서는 域內國產 製品인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稅番變更基準」, 「附加價值基準」, 「3重 또는 4重 變形基準」을 채택하고 있는데, 重電機製品의 경우 「稅番變更基準」과 「附加價值基準」이 적

용된다.

「稅番變更基準」이란 製品의 製造 및 生產過程에서 투입된 原資材 또는 部品의 稅番과 同 原資材 또는 部品을 加工·組立하여 生산된 製品의 稅番이 上이 할 경우 該當工程이 行해진 國家를 原產地로 인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重電機製品의 대부분은 동 원칙에 의해 域內產 여부가 판정된다.

그러나 稅番變更基準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投資(예: 單純組立工程)를 域內國에 함으로써 부당한 관세 면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特定 品目에 대해서는 특정공정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附加價值가 域內國에 발생할 경우에 한해 동 공정이 行해진 國家를 原產地로 인정하는 「附加價值基準」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어느정도의 附加價值가 域內에서 創出되어져야 하는가(現地 附加價值: regional value content)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去來價格方式(transaction value method)」과 「純費用 方式(net cost method)」을 채택하여, 去來價格 方式의 경우에는 60%, 純費用 方式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附加價值가 域內에서 창출되어야 國內產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原產地 規程으로 「稅番變更基準」이 적용되는 重電機製品의 경우에는 대미수출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附加價值 基準」이 적용되는 重電機製品의 경우에는 域內國 企業들이 原資材 또는 部品의 輸入先을 역내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대미수출 뿐만 아니라 對캐나다, 對멕시코 輸出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品目別 影響

重電機製品은 크게 回轉機器, 靜止機器, 其他 重電機로 구분되는데 NAFTA로 인한 각 품목별 영향은 다음과 같다.

##### (1) 回轉機器

###### ① 貿易現況

우리나라의 1989~1991년중 回轉機器製品 對美輸出은 發電機가 연평균 6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電動機 電動工具가 연평균 각각 1.5%, 35.1% 감소하여 전체 對美輸出은 연평균 -1.1%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멕시코는 동 기간중 電動工具의 연평균 對美輸出이 10.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發電機

### 논단 III

電動機의 연평균 대미수출이 7.8%, 7.9% 증가한 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6.3%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回轉機器製品 美國 輸入市場 占有率이 1989년 2.4%에서 1991년에는 2.2%로 하락한데 비해 멕시코는 동 기간중 15.1%에서 15.9%로 증가하였다.

표 4. 韓·멕시코의 回轉機器製品 對美輸出 現況  
(單位: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2,282,045	2,337,813	2,443,978	3.5
韓 國	54,574 (2.4)	50,490 (2.2)	53,354 (2.2)	-1.1
멕 시 코	343,584 (15.1)	332,054 (14.2)	388,385 (15.9)	6.3

註: ( )는 美國의 重電機製品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② 關稅撤廢로 인한 影響  
回轉機器 總 50個 品目(HS 8단위 기준)중 미국의

관세율이 0 또는 GSP 품목인 48個 品目은 NAFTA의 關稅撤廢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으나, GSP例外品目인 기타 단상의 交流電動機(HS 85014040, 85014060)의 對美輸出 감소가 예상된다.

76.4W 초과 735W 이하의 단상 交流電動機(HS 85014040)의 경우에는 현행 5%의 관세가 5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의 對美輸出 價格競爭力 약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기타 단상의 交流電動機(HS 85014060)의 경우에는 현행 3.7%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우리의 對美輸出 價格競爭力 弱化效果가 즉시 나타날 것이다.

특히 기타 단상의 交流電動機의 경우 1989~1991년중 우리의 대미수출이 연평균 46.2%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 11월말 현재 美國 輸入市場 占有率도 1.3%에 불과한, 멕시코의 경우 동 기간중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미국의 총수입 증가율 2.5%를 훨씬 상회하는 6.9%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2. 11월말 현재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對美輸出市場 상실이 우려된다.

표 5. 韓·멕시코의 기타 단상의 交流電動機<sup>1)</sup> 對美輸出現況

(단위: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1992. 1~1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242,875	233,428	255,197	285,932	2.5
韓 國	20,419 (8.4)	9,890 (4.2)	5,909 (2.3)	3,831 (1.3)	-46.2
멕 시 코	172,987 (71.2)	178,651 (76.5)	197,652 (77.5)	228,196 (79.8)	6.9

資料: 貿易協會, KOTIS

註: 1) HS 8501.40을 말함

2) ( )는 美國의 기타 단상의 交流電動機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③ 原產地 規程으로 인한 影響

대부분 「稅番變更基準」이 채택되고 있으나 電動機 · 發電機用 部品인 固定子(stator) 또는 回轉子(rotor) 를 輸入하여 完製品인 電動機 또는 發電機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쉽게 稅番變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HS 8503→HS 8501)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特정품목의 경우에는 「附加價值基準」을 채택하고 있

다. 따라서 「附加價值基準」이 적용되는 品目의 경우 北美 3國으로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표 6. 回轉機器製品의 原產地 規程

原產地 規程	內 容
稅番變更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S 4단위 變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세번 이외의 품목 → 8501, 8502, 8503</li> </ul> </li> <li>○ HS 6단위 變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08.10~8508.80 이외의 품목 → 8508.10~8508.80</li> <li>• 8508 이외의 품목 → 8508.90</li> </ul> </li> </ul>
附加價值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03. 00. a1(8501 제품용 stator and rotors) → 8501</li> <li>• 8406, 8411, 8501, 8503 → 8502</li> <li>• 8501, 8508. 90. a1(housings) → 8508.10~8508.80</li> </ul>

場 占有率이 1989년 2.1%에서 1991년에는 2%로 하락한데 비해 멕시코는 동 기간중 16.6%에서 19.0%로 증가하였다.

표 7. 韓·멕시코의 靜止機器製品 對美 輸出現況  
(단위: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3,408,633	3,564,590	3,922,296	7.3
韓 國	72,701 (2.1)	72,140 (2.0)	76,878 (2.0)	2.8
멕 시 코	565,606 (16.6)	687,646 (19.3)	746,453 (19.0)	14.9

註: ( )는 美國의 靜止機器製品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 (2) 靜止機器

### ① 貿易現況

우리나라의 1989~1991년 중 靜止機器製品 對美輸出은 차단기, 배전제어장치, 변환장치가 연평균 각각 17.9%, 113.2%, 7.9%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압기, 개폐기, 전기로·가열기, 전기용접기가 연평균 각각 2.5%, 16.7%, 57.6%, 50.9% 감소하여 전체 대미수출은 연평균 2.8% 증가에 그쳤다.

이에 비해 멕시코는 동 기간중 전기로·가열기만이 대미수출 감소를 보였을 뿐 전부문이 증가세를 보여 전체 대미수출이 연평균 14.9%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靜止機器製品 美國 輸入市

### ② 關稅撤廢로 인한 影響

靜止機器製品 總 38個 品目(HS 8단위 기준) 중 GSP 品目인 36個 品目은 NAFTA의 관세철폐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으나, GSP 예외품목인 정지형 변환기(HS 85044000)와 기타의 개폐기(HS 85365000)의 대미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정지형 변환기(현행 관세 3%)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의 對美輸出 價格競爭力 弱化效果가 즉시 나타날 것이나, 기타의 개폐기(현행 관세 5.3%)는 관세가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되며 때문에 가격경쟁력 약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표 8. 韓·멕시코의 정지형 변환기 對美 輸出現況

(단위: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1992. 1~1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730,769	765,398	811,325	912,779	5.4
韓 國	25,705 (3.5)	24,181 (3.2)	30,347 (3.7)	38,568 (4.2)	8.7
멕 시 코	122,090 (16.7)	130,347 (17.0)	117,923 (14.5)	105,138 (11.5)	-1.7

註: ( )는 美國의 정지형 변환기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 논단 III

특히 기타 개폐기의 경우 1989~1991년중 우리의對美輸出이 연평균 16.2%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 11월말 현재 美國 輸入市場 占有率도 0.7%에 불과하나, 멕시코의 경우 동 기간중의 연평균 수출증

가율이 美國의 총수입증가율 11.7%를 훨씬 상회하는 21.0%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2. 11월말 현재 美國 輸入市場 占有率이 31.6%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의 對美 輸出市場 상실이 우려된다.

표 9. 韓·멕시코의 기타의 개폐기 對美 輸出現況

(단위: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1992. 1~1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677,032	769,293	845,053	905,057	11.7
韓 國	11,603 (1.7)	9,434 (1.2)	8,147 (1.0)	6,676 (0.7)	-16.2
멕 시 코	175,829 (26.0)	225,391 (29.3)	257,389 (30.5)	286,116 (31.6)	21.0

註:( )는 美國의 기타의 개폐기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 ③ 原產地 規程으로 인한 影響

대부분 「稅番變更基準」이 채택되고 있으나,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유도자의 부품을 輸入하여 完製品인 안정기,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유도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쉽게 稅番變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에(HS 8504.90→HS 8504.10~8504.50)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품목의 경우에는 「附加價值基準」이 적용되는 品目의 경우 北美 3 國으로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표 10. 靜止機器製品의 原產地 規程

原產地 規程	內 容
稅番變更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S 4단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세번 이외의 품목→8535, 8536, 8537, 8538</li> </ul> </li> <li>○ HS 6단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02 이외의 품목→8502.40</li> <li>• 8504 이외의 품목→8504.21~8504.90</li> <li>• 8514 이외의 품목→8514.10~8514.90</li> <li>• 8515 이외의 품목→8515.11~8515.90</li> </ul> </li> <li>○ HS 8단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04.40 이외의 품목→8504.40a1(8471의 자동자료 처리기기용 power supplies), 8504.40a2(전기모터용 speed drive controllers)</li> <li>• 당해세번 이외의 품목→8504.90a2(8471의 자동자료 처리기기용 power supplies 부품), 8535.90a1(motor starters and motor overload protectors), 8536.30a1(motor overload protectors), 8536.50a1(motor starters)</li> </ul> </li> </ul>
附加價值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04.90→8504.10~8504.50</li> <li>• 8514.90→8514.10~8514.40</li> <li>• 8515.90→8515.10~8515.80</li> <li>• 8538.90a1(8535.90a1, 8536.30a1, 8536.50a1의 부품)→8535.90a1, 8536.30a1, 8536.50a1</li> <li>• 8538.90a2(printed circuit assemblies), 8538.90a3(moulded parts)→8535, 8536, 8357</li> </ul>

## (3) 其他 重電機

## ① 貿易現況

우리나라의 1989~1991년 중 其他 重電機 對美輸出은 電壓調整用機器가 연평균 173.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電極 및 電磁石, 애자類, 기타 電氣機器가 연평균 각각 33.1%, 7.9%, 22.7% 감소하여 전체 대미수출은 연평균 13.0%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멕시코는 동 기간중 애자類만이 연평균 0.7% 감소를 보였을 뿐 전부문이 증가세를 보여 전체 대미수출이 연평균 7.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其他 重電機 美國 輸入市場占有率이 1989년 2.2%에서 1991년에는 1.6%로 하락한데 비해 멕시코는 동 기간중 18.2%에서 19.9%로 증가하였다.

표 11. 韓·멕시코의 其他 重電機 對美 輸出現況

(단위: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3,687,381	3,933,692	3,869,340	2.4
韓 國	82,536 (2.2)	62,751 (1.6)	62,412 (1.6)	-13.0
멕 시 코	670,198 (18.2)	736,515 (18.7)	770,119 (19.9)	7.2

註: ( )는 美國의 重電機製品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표 12. 韓·멕시코의 피뢰기·전압제한기·서어지억제기 對美 輸出現況

(단위: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1992. 1~1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31,051	35,928	30,619	22,450	-0.7
韓 國	1,647 (5.3)	3,102 (8.6)	2,375 (7.8)	1,237 (5.5)	20.1
멕 시 코	13,961 (45.0)	20,473 (57.0)	15,052 (49.2)	6,650 (29.6)	3.8

註: ( )는 美國의 피뢰기·전압제한기·서어지억제기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 ② 關稅撤廢로 인한 影響

其他 重電機 總 38個 品目(HS 8단위 기준) 중 GSP品目인 36個 品目은 NAFTA의 관세철폐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으나, GSP 예외품목인 피뢰기·電壓制限機·서어지억제기(HS 85354000)와 其他의 電氣機器(HS 85438090)의 對美輸出減少가 예상된다.

특히 피뢰기·電壓制限機·서어지억제기(현행관세 5.3%) 및 其他의 電氣機器(현행관세 3.9%)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미수출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對美 輸出減少 效果가 즉시 나타날 것이다.

표 13. 韓·멕시코의 其他 電氣機器<sup>1)</sup> 對美 輸出現況

(단위: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1992. 1~1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575,980	622,607	571,133	604,216	-0.4
韓 國	27,845 (4.8)	23,055 (3.7)	18,558 (3.2)	10,189 (1.7)	-18.4
멕 시 코	43,893 (7.6)	42,575 (6.8)	30,800 (5.4)	26,496 (4.4)	-16.2

註: 1) 8543.80을 말함.

2) ( )는 美國의 其他 電氣機器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 논단 III

#### ③ 原產地 規程으로 인한 影響

대부분 「稅番變更基準」이 채택되고 있으나, 其他 電氣機器의 部品을 輸入하여 입자가속기, 신호발생기 등의 完製品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쉽게 稅番變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HS 8543.90→HS 8543.10~8543.80)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품목의 경우에는 「附加價值基準」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附加價值基準」이 적용되는 品目의 경우 北美 3國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표 14. 其他 重電機 製品의 原產地 規程

原產地 規程	內 容
稅番變更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S 4단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45~8548 이외의 품목→8545~8548</li> </ul> </li> <li>○ HS 6단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04 이외의 품목→8504.10</li> <li>• 8505 이외의 품목→8505.11~8505.90</li> <li>• 8535 이외의 품목→8535.40, 8535.90</li> <li>• 8536 이외의 품목→8536.41~8536.49, 8536.61~8536.90</li> <li>• 8538 이외의 품목→8538.90</li> <li>• 8543 이외의 품목→8543.10~8543.90</li> </ul> </li> <li>○ HS 8단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43.80 이외의 품목→8543.80.a1(microwave amplifiers)</li> </ul> </li> </ul>
附加價值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05.90→8505.11~8505.30</li> <li>• 8543.90→8543.10~8543.80</li> <li>• 8504.40, 8543.90.a1(printed circuit assemblies)→8543.80.a1</li> </ul>

## 2. 其他 電氣產業의 品目別 影響

### 가. 電線類

#### (1) 貿易現況

199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電線類 對美輸出은 1,525萬 달러이었으며 1989~1991년중의 연평균 對美輸出增加率은 -8.4%를 기록하였다. 이는 동 기간中 通信 케이블, 光纖維 케이블이 연평균 각각 11.5%,

250.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權선用 電線, 電力 케이블, 점화용 와이어링이 연평균 각각 37.0%, 19.0%, 24.0% 감소한데 기인한다.

이에 비해 1991년말 현재 멕시코의 電線類 對美輸出은 우리의 약 112배 규모인 17億 208萬 달러이었으며 1989~1991년중의 연평균 對美輸出增加率도 5.1%를 기록하였다. 이는 동 기간中 權선用 電線, 電力 케이블의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通信 케이블, 점화용 와이어링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電線類 製品 美國 輸出市場占有率이 1989년 0.9%에서 1991년에는 0.5%로 하락한데 비해 멕시코는 동 기간中 54.9%에서 58.9%로 증가하였다.

표 15. 韓·멕시코 電線類 對美 輸出現況

(단위: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2,809,673	2,913,360	2,888,233	1.4
韓 國	18,187 (0.6)	20,177 (0.7)	15,248 (0.5)	-8.4
멕 시 코	1,541,721 (54.9)	1,619,658 (55.6)	1,702,080 (58.9)	5.1

註: ( )는 美國의 電線類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 (2) 關稅撤廢로 인한 影響

電線類 總 14個 品目(HS 8단위 기준)중 GSP 品目인 13個 品目은 NAFTA의 관세철폐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으나, GSP 예외품목인 전압 80V 초과 1,000V 이하의 기타 전기도체(HS 85445180)의 對美 輸出減少가 예상된다.

그러나 기타의 전기도체(현행 관세 5.3%)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미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 (3) 原產地 規程으로 인한 影響

대부분 「稅番變更基準」이 채택되고 있으나, 「附加價值基準」이 적용되는 品目의 경우 北美 3國으로의 輸出減少가 예상된다.

표 16. 韓·멕시코의 기타 전기도체<sup>1)</sup> 對美 輸出現況

(단위: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1992. 1~1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470,238	501,657	456,679	441,418	-1.5
韓 國	5,589 (1.2)	5,155 (1.0)	4,934 (1.1)	4,632 (1.0)	-6.0
멕 시 코	242,140 (51.5)	262,500 (52.3)	236,190 (51.7)	224,507 (50.9)	-1.2

註: 1) HS 8544.51을 말함.

2) ( )는 美國의 기타 전기도체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표 17. 電線類의 原產地 規程

原產地 規程	內 容
稅番變更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S 6단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44.11~8544.60 이외의 품목 → 8544.11~8544.60</li> <li>• 8544.70 이외의 품목 → 8544.70</li> </ul> </li> </ul>
附加價值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08, 7413, 7605, 7614 → 8544.11 ~8544.60</li> <li>• 7002, 9001 → 8544.70</li> </ul>

## 나. 乾電池·蓄電池

## (1) 貿易現況

199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乾電池·蓄電池 對美輸出은 1,531萬 달러이었으며 1989~1991년중의 연평균 對美輸出 增加率은 -2.8%를 기록하였다.

이는 동 기간中 乾電池·蓄電池가 연평균 각각 3.6%, 2.3%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비해 1991년말 현재 멕시코의 乾電池·蓄電池 對美輸出은 우리의 약 10배 규모인 1億 5,432萬 달러이었으며 1989~1991년중의 연평균 對美輸出 增加率도 15.4%를 기록하였다. 이는 동 기간中 乾電池가 연평균 20.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蓄電池가 연평균 15.7% 증가한데 힘입은 바 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乾電池·蓄電池 美國 輸入市場 占有率이 1989년 2.2%에서 1991년에는 1.9%로 하락한데 비해 멕시코는 동 기간中 15.8%에서 18.8%로 증가하였다.

표 18. 韓·멕시코의 乾電池·蓄電池 對美 輸出現況  
(단위: 천달러)

區 分	1989	1990	1991	연평균증가율 ('89-'91)
美國의 總輸入	731,114	741,205	822,173	6.0
韓 國	16,193 (2.2)	17,357 (2.3)	15,311 (1.9)	-2.8
멕 시 코	115,829 (15.8)	127,373 (17.2)	154,315 (18.8)	15.4

註: ( )는 美國의 乾電池·蓄電池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 (2) 關稅撤廢로 인한 影響

乾電池·蓄電池 總 13個 品目(HS 8단위 기준)은 모두 GSP 品目이기 때문에 NAFTA의 관세철폐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原產地 規程으로 인한 影響

대부분 「稅番變更基準」이 채택되고 있으나 「附加價值基準」이 적용되는 品目の 경우 北美 3國으로의 輸出減少가 예상된다.

표 19. 乾電池·蓄電池의 原產地 規程

原產地 規定	內 容
稅番變更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S 6단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06 이외의 품목 → 8506.11~8506.90</li> <li>• 8507 이외의 품목 → 8507.10~8507.90</li> </ul> </li> </ul>

原產地 規定	内 容
附加價值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06.90→8506.11~8506.20</li> <li>• 8507.90→8507.10~8507.80</li> </ul>

## IV. 對應方案

NAFTA 체결이 우리 電氣產業의 對美輸出에 미치는 否定的 影響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美國市場의 維持 擴大와 성장잠재력이 큰 멕시코市場 先占이라는 목표하에 現地部品 調達比率의 提高와 멕시코로의 投資轉換이 중심이 되는 다음과 같은 對應戰略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NAFTA 체결로 인해 멕시코의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美國 등 先進國企業들의 對멕시코 進出이 증대되고 멕시코企業과 기 진출한 外國企業과의 協力이 촉진될 경우 향후 멕시코의 대미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北美市場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한 수출경쟁이 예상되는 重電機產業에서의 輸出構造를 高度化함으로써 競爭力を 提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企業은 新製品, 新技術에 대한 研究開發投資 擴大, 技術開發人力의 確保 및 生產性 向上을 위한 設備自動化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OEM을 통한 輸出의 止揚 및 自體商標의 開發과 대미수출 주요상품을 技術集約의 以면서 高附加價值 製品으로 轉換해 나가야 한다. 또한 政府는 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 및 설비자동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租稅 및 金融상의 支援을 強化하는 한편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分業生產 體制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NAFTA의 주요내용중 우리의 重電機產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關稅撤廢로 인한 對美輸出 價格競爭力의 弱化와 原產地 規程의 強化인 바, 미국의 對멕시코 관세철폐로 인해 대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되는 단상의 교류전동기, 개폐기 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對美 輸出據點 確保를 위한 對멕시코 직접 投資를 모색하여야 하나 단순히 低賃金과 관세면제 혜택을 위한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현재 멕시코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열악, 미국의 압력에 의한 環境規制 強化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汎美洲 統合을 고려하여 中南美市場으로의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附加價值基準이 적용되는 重電機 部門에서는 大企業과 部品生產 中小企業의 對멕시코 同伴進出이 고려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업이 對멕시코 投資를 活性화할 수 있도록 韓·멕시코 間의 投資保障協定, 二重課稅 防止協定 등의 각종 협정체결 및 美洲開發銀行(IDB)에의 조속한 가입, 민항기의 멕시코로의 직항로 개설 등 양국간 經濟協力を 強化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셋째, NA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北美市場으로의 安定的인 市場接近 보장을 위해서는 域外國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도입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이를 위해 政府는 雙務的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多者間 次元에서도 적극적인 通商外交 努力を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NAFTA 체결로 인한 외국인 투자 완화 또는 자유화 조치 및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이 제3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쌍무적 차원의 통상외교 노력과 병행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UR의 原產地 規程, 反덤핑 協定, 技術障壁協定 등 분야별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NAFTA 협정내용중 역외국에 차별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日本 등 第3國과의 공동보조하에 GATT에 심사요청을 하는 등 다자적 통상외교 활동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NAFTA 체결에 의한 貿易轉換 效果를 최소화시키면서 美國市場 占有率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기업과 北美 3國 企業과의 研究開發·生產·販賣協力を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民間次元에서의 產業·技術協力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